



서울고등법원

제 4 특 별 부

판 결

사 건	2003누13955	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원 고 피 항 소 인	참여연대	
피 고 항 소 인	국회사무총장	
제1심 판결	서울행정법원	2003. 7. 9. 선고 2000구39953 판결
변 론 종 결	2004. 6. 11.	
판 결 선 고	2004. 7. 9.	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가 2000. 9. 25.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목록 기재 정보(같은 목록의 각 순번별로 지출증빙번호란 기재 결의서 번호로 작성된 각 지출결의서와 그에 부속된 증빙내역란 기재 각 문서를 말한다)를 공개하지 아니한 부분을 취소한다.

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,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

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11행의 '제14 제1항'을 '제14조 제1항'으로, 9면 9행의 '집행내역확인서'를 '집행내용확인서'로, 같은 면 13행과 11면 8행, 14면 아래에서 6행의 각 '이 법원'을 '제1심 및 당심 법원'으로, 10면 아래에서 3행, 11면 5행과 13면 아래에서 6행, 14면 아래에서 5행의 각 '국회위원'을 '국회의원'으로 각 정정하고, 10면 9행에 열거된 위원회운영비 목록 순번 중 '18'과 '40'을 같은 면 아래에서 6행에 열거된 위원회운영비 목록 순번에 옮겨 적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, 민사소송법 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.

2. 결 론

그렇다면,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양동관 _____

 판사 오석준 _____

 판사 한숙희 _____